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8-081호 (사건번호 : 2021조총0030)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5. 10.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20.7.9.)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2020년도 재학생 연락처 자료를 '20. 7. 6. 기준 아래와 같이 수집· 보관하고 있다.

개인정보파일	수집·이용 항목	수집기간	보유건수(명)
'20년도 재학생 연락처	성명, 학과, 전공, 학번, 휴대전화번호	'20.3.2.~ '20.7.6.	4,187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재학생의 개인정보 4,187건이 유출되었으며, 성명·학과·전공·학번·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2020.	7. 6.	톡에 '재학생 연락처' 게재
		재학생이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유출 사실 인지 첨부된 '재학생 연락처' 파일을 시스템에서 삭제 수신자의 삭제되지 않은 파일 삭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반드시 삭제 및 유출을 금하는 협성톡 공지 발송
	7.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7. 9	개인정보 유출 신고

3) 유출 경위

대학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가 톡(내부 메신져)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자료를 게재하면서, 실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학생 연락처' 파일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톡'에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자료를 게재하면서 재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4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메신져에 게재할 자료 중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1회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H 1117.5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감경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2019. 10. 7. 이하 '과태료 부과지참')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조사 태도 및 시정 노력,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기준(▲내용·정도 중요, ▲은폐·조작 위반, ▲검사 거부·미시정, ▲피해자 10만명 이상, ▲ 2차 피해 발생, ▲위반 기간 3개월 이상, ▲기타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기준(▲ 중·소기업, ▲내용·정도 경미, ▲장애·심신미약자, ▲부주의 또는 피해없음, ▲검사 전 시정·해소, ▲의견제출 기간 시정·해소, ▲기타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당자의 단순 부주의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검사 전 시정하여 위 반상태를 해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기준('19.10.7.)>

유 형	내 용	기 준
대상 규모	중·소기 업	감경(50%)
내용·정도	경미사항 3/10 미만 위반*	감경(50%)
₩ 0 . 0 ±	중요사항 7/10 미만 위반*	가중(50%)
위반자 유형	장애 / 심신미약자 등	감경(50%)
	부주의 등 + 피해없음	감경(50%)
	검사 전 시정 / 해소	감경(50%)
태도·노력	의견제출 기간 시정 / 해소	감경(25%)
	은폐·조작 위반	가중(50%)
	검사 거부 / 미시정	가중(50%)
	피해자 10만명 이상	가중(50%)
결과	2차 피해 발생	가중(50%)
	3개월 이상	가중(50%)
기타 필요시	기타 필요시	감경
기뇌 걸표시	기타 필요시	가중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75조제2항제6호	600		300	300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5월 10일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